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
참 조

제 목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개정(안)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
알림



1. 최근 환경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('23.9.25)*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” 개정(안)을 입법예고('24.8.30 ~ 10.14) 하였습니다.

* 국내 토양 특성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토양오염기준 개선 요구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(화)까지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령(안) 주요내용

구분	주요 내용			
		1지역(mg/kg)	2지역(mg/kg)	3지역(mg/kg)
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불소기준 합리화 (안 별표3)	기존 기준	400	400	800
	조정 기준	800	1,300	2,000

※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

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 (담당자)	개정안에 대한 의견 (찬성/반대/수정)	사유 (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)

- 붙임 : 1.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.
2.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1부(홈페이지 참조)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08/30

주임 **염경미** 팀장 **권병문** 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조정환** 회장 **박하준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287 (2024.8.30.) 접수

우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미로27길 2 (양재동, 일동홀딩스(주)사옥) 3층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cped2110@koras.org / 공개